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김현기, 박수빈,
박승진, 유만희, 이경숙,
이원형, 임규호, 정준호,
한 · 신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‘정비사업 정보몽땅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한 조합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신설 (안 제52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기술지원 및 정보제공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신 설)	제52조(기술지원 및 정보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 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0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,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건설할 때 준주거지역의 경우 및 공동이용시설·주만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 상한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